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국내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언*1

김 윤 희 · 여 환 명 · 방 성 준 · 양 상 윤 · 강 승 모 · 황 권 환*2†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the Labeling System for Wood-based Products and Expanding in Korea*1

Yunhui Kim · Hwanmyeong Yeo · Sungjun Pang ·
Sangyun Yang · Sungmo Kang · Kweonhwan Hwang*2†

요 약

목재산업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목재의 이용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목재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지닌 목재제품이용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목재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재목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본의 규격·품질표시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표시제도는 시스템 진화를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기에는 산림청 중심으로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성장기 및 성숙기를 통해 인식구조 개선과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Wood-based products market is new growth engine industry of “Green growth policy”.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law, sustainable use of wood, for expanding wood and wood-based

*1 접수 2013년 3월 5일, 채택 2013년 3월 5일

*2 한국임업진흥원 기술지원본부 품질인증팀,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권환(e-mail: khwang@kofpi.or.kr)

products market in 201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sustainable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valuable natural resources, offer expanding quality assurance services for wood-based products, and explore measures for expanding wood-based products labeling system. Through discussed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and literatures that concern wood-based products labeling system and investigated case studies that were presently operational. For expanding quality assurance services of wood-based products, Korea Forest Service operates a wood-based products labeling system in integrated management through variety awareness and specialist assessment for each product. This process will make enhanced wood-based products labeling system expanded gradually. To evolve into 3rd party quality assurance services on maturity age of labeling system, public communication will help improve awareness of producer and consumer. appropriate incentive program will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woodbased product industry. Producers consider environmental ethics in their business and consumer should exercise their right to know.

Keywords: labeling system, wood-based products, 3rd party certification

1. 서 론

소비자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상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표시와 광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와 표시의 영향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과 전달로 인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산업과 시장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김기옥 외(2004)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소비자 정보(Consumer Information)를 꼽았으며,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의사결정에서 소비자 자신의 욕망충족 및 기타 목표설정에도 유용하고 유의성 있는 가치를 지니는 정보로 정의 내리고 있다. 소비자 정보는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정책(Information Remedies)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 및 종류를 향상시킴으로써 정보시장의 결함을 직접 시정하는 것이다. 최숙희(2005)는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정보제한의 철폐, 기반·오도된 정보의 금지, 소비자 정보의 증대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

로 인한 이득을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소비자 정보의 비귀속성으로 인해 자본을 투자하여 소비자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수준만큼 채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 정보공개정책(Information Disclosure)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정보를 생산자나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윤정, 1995).

최근 5년간 범정부적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와 웰빙, 로하스(LOHAS) 부각으로 목재 및 관련 산업이 중요한 녹색산업으로 재조명받고 있으며, “녹색성장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제도(품질인증 및 품질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상공부 수출검사법 제3조에 의한 임산물 검사에서 시작된 국내 임산물 품질관리제도는 1967년 보통합판과 특수합판이 대상품목으로 포함되면서 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본격화되었다. 2012년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품질표시 의무대상품목을 4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게 되었다. 또한, 목재제품에 대한 적합한 품질 관리제도 및 임산물에 대한 전문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2012년 1월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체계적 지원, 품질관리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은 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현장 확산을 통한 산업화로 임업 및 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 ② 글로벌 임업기술정보 경영개선 지원 체계 확립으로 산림소득 증대 및 임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향상, ③ 최고 수준의 인증·분석·검사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임산물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목재법에 따른 주요 사업을 다루고 있다.

국제적인 친환경 움직임과 더불어 실제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일정수준의 품질을 보장해줄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품질관리제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목재제품 품질 관리제도 확대에 따른 국내외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효과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40년 이상이 되었으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도로서 활성화 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2012년 5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목재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4품목(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재목, 목재펠릿)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의 동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외 유사 품질관리제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형사례들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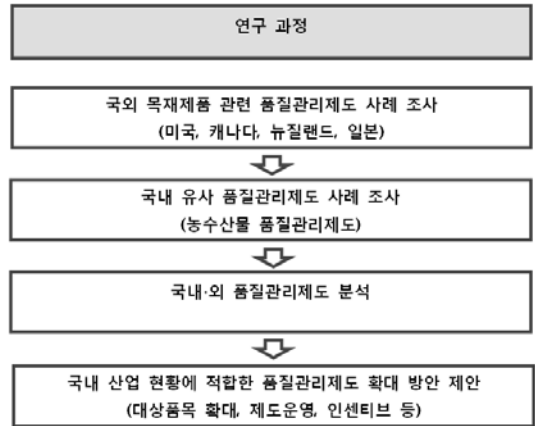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Scheme.

3. 국내·외 품질관리제도 관련 동향

3.1. 국외 품질관리제도

3.1.1. 미국

미국의 목재제품 관련 표시제도는 침엽수 제재목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미국 상무부 산하의 국립표준기술협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발간하는 제품 표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는 표준위원회, 검열국, 규정위원회 및 인증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전제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은 정부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임명되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표준의 작성과 개정, 각 기관의 운영, 품질인증 및 표시 등의 기능 수행은 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 및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장기 교육 프로그램, 단기 교육 프로그램, 품질인증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등급사 육성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3.1.1.1. American Lumber Standard Committee

미국의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운영되며 다양한 표준을 제공하며, 각 품질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국내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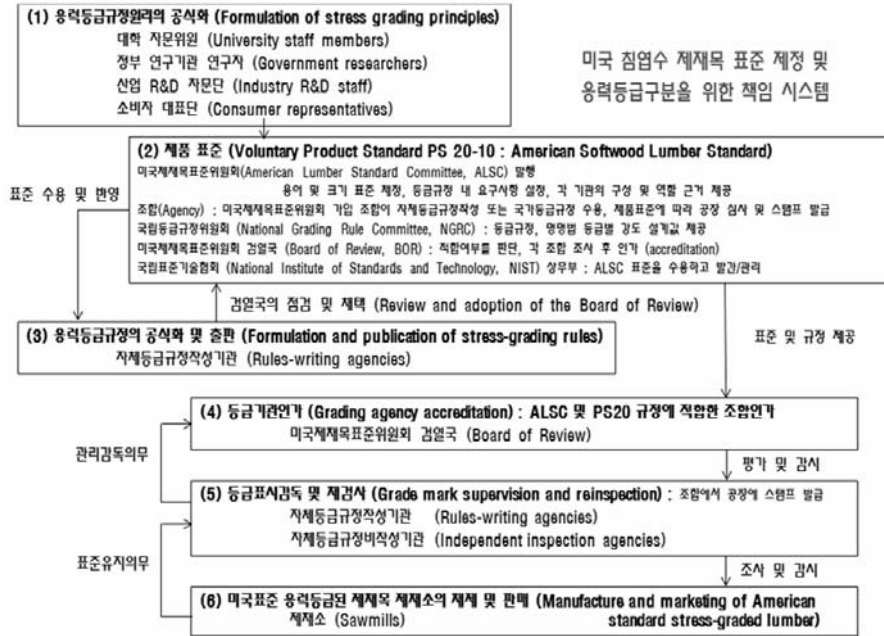


Fig. 2. Sawn lumber quality certification and quality mark system of United States.

Source: Forest Service (2012)

상임위원회는 소비자 집단 또는 국방부, 농무부, 내무성, 조달청, 주택 및 도시발전부, 국립표준기술협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제품 표준의 개정과 개선의 업무를 수행한다.

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면 정기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의결하며, 자체등급규정 기관의 정족수 중 과반수 이상과 위원의 정족수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투표를 통해 의결하여 개정사항을 발간한다.

3.1.1.2. Board of Review

검열국은 표준위원회에서 수립한 표준 집행, 규정 허가, 회원 기관의 인가, 인가 철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표준위원회의 표준 준수 여부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보증한다. 검열국은 품질인증기관의 인가, 관리, 감시, 허가의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증기관이 회원사 관리를 부적합하게 하는 경우 인가를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1.2. 캐나다

캐나다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는 캐나다 표준협회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에서 발간하는 표준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표준협회, 국립목재등급청, 표준인가검열국 등으로 투명한 규제 체계를 지닌다. 캐나다의 제재목 관련 품질관리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두 개의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NLGA (National Lumber Grades Authority)는 등급 규정과 특수제품표준 작성, 해석, 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CLSAB (Canadian Lumber Standards Accreditation Board)는 기관 인가, 정기적 기관 감시 및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1.1.3. National Grading Rule Committee

국립등급규정 위원회는 표준에 충족하는 등급규정의 작성, 등급별, 성능비, 등급표시법, 명명법 등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등급규정을 작성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등급규정 수립 및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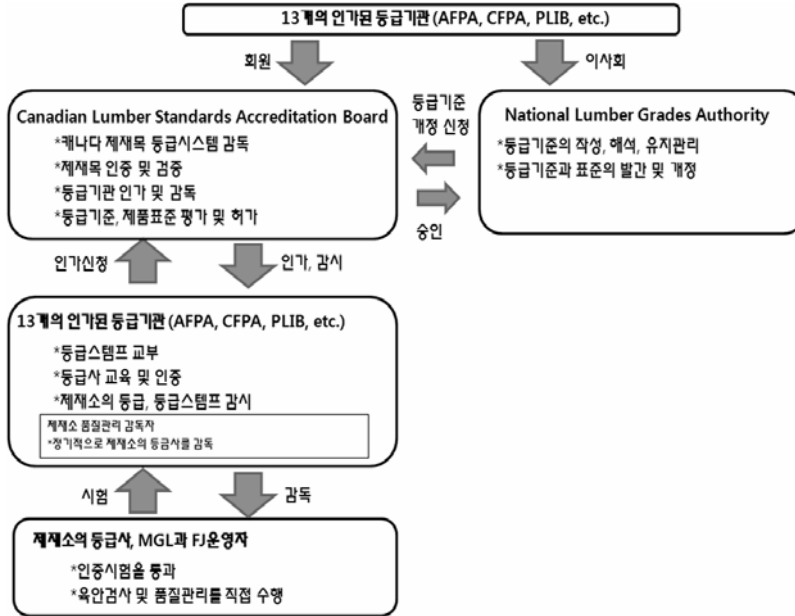


Fig. 3. Sawn lumber quality certification and quality mark system of Canada.

3.1.2.1. National Lumber Grades Authority

캐나다의 제재목 등급 규정에 관련된 내규와 기술 위원회 절차 및 규정 등에 대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등급 규정과 특수제품에 대한 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수행하며, 미국내에서의 사용자를 위한 AF&PA, NDS 등의 기관과 인정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3.1.2.2. Canadian Wood Council

설계 또는 제품 전반에 걸친 공학적·기술적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인 FPIInnovations (구Forintek) 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1.2.3. Canadian Lumber Standards Accreditation Board

CLSAB는 인증과 검증을 통한 인증기관 인가 및 감독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3.1.3.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NZS (New Zealand Standard)에 의한

인증제도가 발달한 나라로 제3의 기관을 통한 인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제3의 기관으로는 Verified Timber Ltd, Grade Right Ltd, Bureau Certitas가 있으며 웹페이지를 통한 승인, 등급, 크기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회원사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3.1.4. 일본

목재 및 목재제품과 관련된 규격은 일본공업규격 (JIS)와 일본농림규격 (JAS)으로 대별할 수 있다.

3.1.4.1. Japan Agricultural Standard (JAS)

강제적인 국가규격으로 일본농림수산성에서 지정한 품목 중에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품질, 생산방법 및 라벨링(품질표시)을 통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일본농림수산성이 지정한 제3자 인증기관이 생산자,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자 인증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특징으로는 제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제조공정을 관리하고, 제품이 JAS 규격에 적합하지 아닌지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업자는 등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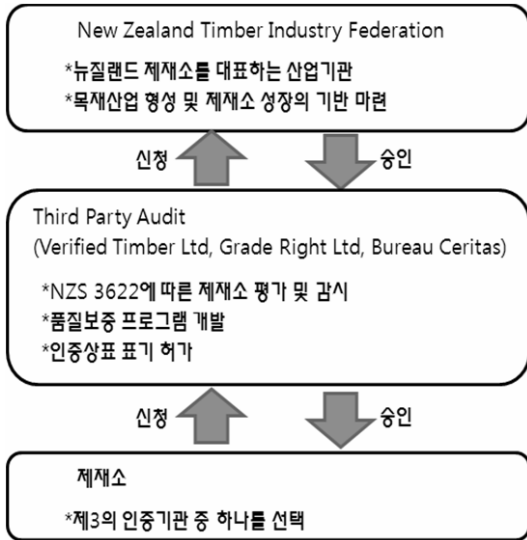


Fig. 4. Sawn lumber quality certification and quality mark system of New Zealand

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품질표시기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감시를 통해 위반시 벌금 및 등록 취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3.1.4.2.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일본의 공업표준제도는 제품의 품질 특성을 일본공업표준(JIS)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생산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것으로 관련사항의 표시를 통해 소비자·사용자는 그 제품의 품질, 특성의 좋고 나쁨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어 그 제품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2005년 10월부터 국가에서 주도하여 운영하던 방식에서 제3자 기관으로부터의 인증체제로 전환하였다.

3.2. 국내 유사 품질관리제도

임산물은 품질의 다양성, 불균일성, 부패, 변질 등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시장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이러한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상품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준규격화가 필요하다. 임산물의 표준규격화와 가장 유사한 제도로 국내 농산물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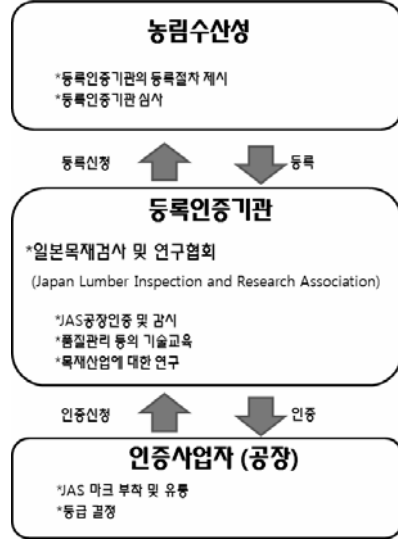


Fig. 5. Sawn lumber quality certification and quality mark system of Japan

규격화를 꼽을 수 있으며,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표준규격화를 통해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정거래 촉진과 수송, 적재 등 유통비용 절감으로 인한 유통의 효율성, 선별·포장 출하로 소비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를 기대 효과로 보고 있다.

농산물은 임산물과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에 국정검사 규격을 추진함으로써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 소비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전자상거래가 진전됨에 따라 등급규격을 소비자 지향적, 디지털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의 품질관리 관련 법적 근거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들 수 있으며, 운영체계는 품질관리심의회, 사후관리, 안전성조사,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명예감시원 및 품질관리사,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2.1. 품질관리심의회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계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3년의 임기 동안 위원들은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2.2. 사후관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표준규격품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거짓표시 등의 금지사항을 적발하도록 하며, 표준규격품과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거짓표시 등의 금지사항으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표준규격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시 금지사항이 적발될 경우 전업이나 폐업으로 더 이상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판매금지 및 표시금지 등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권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집행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표시 등의 금지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칙 집행에 있어 청문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2.3. 안전성 조사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부적합품의 시장 유통 차단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과학적인 안전관리의 토대 구축을 통한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전성 조사는 생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적절히 시행될 때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은 농가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안전성조사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시료수거를 실시하며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

고 있다. 안전성조사 시험분석 업무는 전문적·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의 연구기관 등을 위험평가 유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3.2.4.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농수산물의 검사와 검정은 1945년 도영검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국영검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28개 품목의 농산물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고시되어 있다. 농산물의 검사는 농산물 검사관에 의해 시행되며, 농산물 검사관은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검사관이 검사할 수 있는 품목을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3.2.5. 명예감시원 및 품질관리사

농산물의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유통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된 제도로, 주로 산지 생산자 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3.2.6.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기준에 준하여 생산·관리한 농산물의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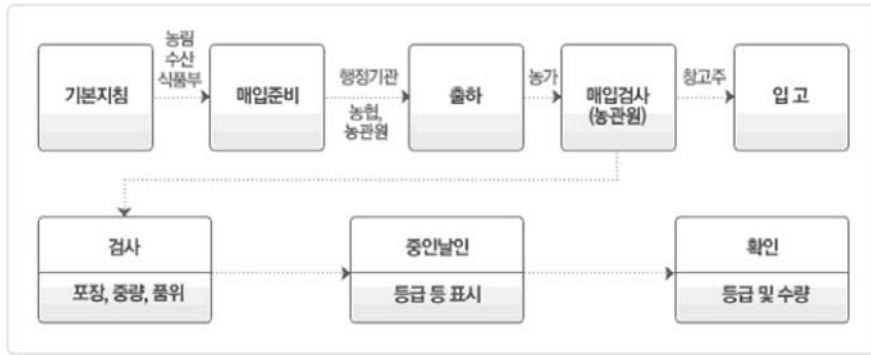


Fig. 6. Agro-Fisheries inspection and qualification process.

Sourc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YPERLINK “http://www.mifaff.go.kr” www.mifaff.go.kr)

3.2.7. 기타 지원사항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4. 국내·외 목재제품 관련 품질관리제도 담당 기관

국의 목재제품 관련 품질관리제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특징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담당정부부처의 주도하에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그 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의 주도보다는 자율적인 움직임이 제도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인가기관 또한 한국과 일본은 정부기관 한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검열국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목재산업 연맹을 통해 제3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가기관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인가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의 인증기관에 대한 독특한 특성은 제3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와 소비자 및 생산자 중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분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정부주도형 품질관리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주도형 품질관리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제목은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등급 구분에 따른 용도 지정이 이루어지는 품목이다.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등급사 양성제도를 들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등급사를 양성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과 지역대학 등에서 장기 및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농수산물품질관리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제품의 규격표준화 및 다양한 자연산물의 취급이라는 점에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제도는 현재 안정권에 진입하여 대상 품목을 해마다 증가시키고 있다. 「목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관리와 안전성 평가, 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등의 프로그램들은 농수산물품질관리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나 품질관리사, 명예감시원 제도 및 자율적 신고제를 활용한 포상금 제도와 같은

Table 1. Quality mark system (Sawn lumber)

	한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담당 정부부처	산림청	상무부	-	-	농림수산성
인가기관	산림청	제재목 표준 위원회 검열국	제재목 표준 인가 검열국	목재산업 연맹	농림수산성
인증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지역별 제3자 품질인증기관	지역별 제3자 품질인증기관	제3 기관	일본목재검사 및 연구협회
등급사 교육기관	-	품질인증기관, 지역 대학 등	품질인증기관	-	-

프로그램들은 「목재법」에 따른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확대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

5.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확대 방안

5.1. 대상품목의 순차적 확대

「목재법」은 목재제품 전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품목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대상품목이 선정되고 시행에 이르기까지 타당성 검토, 규격 제정 및 고시를 위한 검토작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 산업유통패턴 분석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발생가능한 문제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목재제품의 전품목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수입, 유통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법정관리 대상품목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우선 선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목재법」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성 평가, 탄소 저장량 표시 및 측정,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품질인증 품목 등의 프로그램에 따라 그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5.2. 제도 운영

목재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의 경우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제도에 있어 진

화를 거듭하여 현재의 운영체계가 형성되었다. 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와 같이 정부 주도의 운영체제로 시작하였으나 장기간의 홍보와 다양한 노력으로 최근 제3자 인증 및 민간인증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였다. 이는 목재산업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 전환 및 관련 규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국내에서도 정부주도형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목재법」이 제정되었으며 전문기관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도입기에 위치한 국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안정기 진입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산림청의 일원화된 통합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목재산업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도입기·안정기·성숙기에 따른 운영체계의 진화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도입기 및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문제들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제도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적절한 범국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인식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가 국가의 도움 없이도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 의한 도입기 통합운영을 통해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안정기 및 성숙기에 진입한 목재제품 품질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제외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인정·인증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목재산업 선진국 수준의 지속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3. 인센티브 부여

지속적인 친환경 개발에 따른 미래원동력 창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마련과 생산자·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체 및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범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수준 향상과 친환경 목재제품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원활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확대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위한 조달청 등록과 우수제품 인증을 통한 해당업체의 우선 상장을 들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우수제품 인증에 대하여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통해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목재시장은 소비자의 정보 및 인식부족으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목재법 위반사항 신고 및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주도형 시장 운영을 통해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목재제품 시장은 미래 국가원동력 창출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탄소저장량 확보라는 국가경쟁력으로써의 이점을 두루 보유하고 있어 최근 녹색성장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는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마련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을 위해 「목재법」을 제정하고 산림청은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2012~2016)」을 통해 품질관리 전품목 확대 추진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확대 계획에 따라 국내의 품질관리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선진 제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국외의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으로 국내 목재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및 관련 사이트를 고찰하였고 실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 품목에 대한 운영체계를 조사하였다. 국외는 대부분 강제품질표시에서 진화된 품질인증제도가 제3 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아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 품목인 제재목의 경우 등급사를 양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전문가 양성을 통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와 유사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체계와 관련 프로그램을 문헌 및 관련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농산물 품질관리제도의 경우 목재제품과 동일하게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운영과 함께 안전성 평가, 명예감시원, 품질관리원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국내·외 품질관리제도의 조사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전품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품목별 다양성을 인식하고 선정 및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전문가 평가를 통한 점차적 대상 품목 확대와 국가 주도형 통합운영과 함께 안정기 및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범국민 홍보활동과 생산자·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한 민간주도형 3자 기관 운영으로의 구체적 진화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확대가 국가경쟁력으로써의 목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도입기에 위치하고 있는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업계는 환경기업 윤리를 기업의 정신에 담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은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기꺼이 알 권리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이 요구될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의 성공적 전품목 확대를 통해 친환경 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함께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으로써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 사

본 논문은 산림청 과제인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전품목 확대 방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참 고 문 헌

1. 2011임업통계연보, 산림청.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11459호).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29호).
4.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 산림청.
5. 김기욱, 김민정, 문철주, 이정은, 정수희, 한정호. 2004. 한국 소비자의 소비자주의에 대한 태도와 행동. 생활과학 7: 31~43.
6. 최숙희. 2005. 식품표시제 동향과 과제. 여성경제연구 2(1): 61~79.
7. 최병선. 1992. 최근의 환경규제정책수단의 평가. 행정논총 30(2): 177~197.
8. American Lumber Standard Committee (ALSC), <http://www.alsc.org/>
9. Northeastern Lumber Manufactureres Association (NeLMA), <http://www.nelma.org/>
10. Northern Softwood Lumber Bureau (NSLB),
11. Redwood Inspection Service (RIS), <http://www.redwoodinspection.com/>
12. Southern Pine Inspection Bureau (SPIB), <http://www.spib.org/>
13. West Coast Lumber Inspection Bureau (WCLIB), <http://www.wclib.org/>
14. Western Wood Products Association (WWPA), <http://www2.wwpa.org/>
15. American Forest & Paper Association (AF&PA), <http://www.awc.org/>
16. National Lumber Grades Authority (NLGA), www.nlga.org
17. Canadian Wood Council (CWC), www.cwc.ca
18. FP Innovations (Forintek), www.fpinnovaions.ca
19. Canadian Lumber Standards Accreditation Board (CLSAB), www.clsab.ca
20. The New Zealand Timber Industry Federation (NZTIF), <http://www.nztif.co.nz/>
21. Verified Timber Ltd, <http://www.verifiedtimber.co.nz/>
22. Grade Right Ltd, <http://www.graderight.co.nz/>
23. Japan Lumber Inspec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JLIRA), <http://www.jlira.jp/jas.html>
24. 일본주목목재기술센터, <http://www.howtec.or.jp>
25.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MAFF), www.maff.go.jp